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대표발의]

의안번호	2297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2. 6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(대표발의)
김용술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·다양화 되는 재난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, 화재·구조·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환경을 향상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적용범위(안 제2조)
- 다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(안 제3조)
- 라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(안 제5조)
- 마.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- 바.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023. 2. 13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범위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4조(중복지원 제한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
4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표창)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576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제16조(활동비 지원)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